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3.(월) 배포즉시 배포 2023. 7. 3.(월)

정부 합동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전력기금 주무 부처로서 엄중하게 인식 -
- 1차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에 이어, 추가 개선대책 즉시 추진 -
-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TF)'을 통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 -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주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 점검*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 1차 : `21. 9.~`22. 8., 2차 : `22. 10.~`23. 5.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결과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강경성 2차관 주재, 7. 4. 개최 예정)」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금은 일반회계처럼 예산 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한 통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 21. 9월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기금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116억 원을 환수 추진 중이며, 이 중 78억 원은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기 조치 완료(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공고(산업부 공고 ’22. 12월),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23. 3월), 장비 구매계약 공고문(전기안전공사, ’23. 1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정, ’23. 4월), 구매계약사무규정(전기안전공사, ’23. 4월),

이번 2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더욱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함은 물론,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 추가 조치 계획(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산업부 시행규칙, ’21. 4 - 기 조치),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23. 7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부 고시, ’23. 7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부 지침, ’23. 7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23. 11월), 산업기술개발 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23. 11월),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운영지침(연구개발 전담기관, ’23. 9월)

아울러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과 전력기금의 구조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태욱	(044-203-3895)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우	(044-203-5370)
		담당자	주무관	정종호	(044-203-5374)
	산업부 원전지역협력과	책임자	과 장	권기성	(044-203-5290)
		담당자	주무관	홍찬영	(044-203-5296)
	산업부 에너지기술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150)
		담당자	주무관	신수지	(044-203-5154)

붙임 1 1·2차 점검결과에 따른 기 조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 1차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및 계획

분야	기 조치	조치 계획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산업부 규정 1건 개정 전담기관 규정 1건 개정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78억 환수	38억 추가 환수 추진
기 타	산업부 규정 1건 개정 전담기관 규정 2건 개정	-

□ 2차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및 계획

분야	기 조치	조치 계획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산업부 규정 1건 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산업부 규정 2건 개정
전력분야 연구개발	-	산업부 규정 2건 개정 전담기관 규정 1건 개정
기 타	산업부 규정 1건 개정	-

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1·2차 점검) : 4,416건, 6,745억원

○ **(지적)** 세금계산서의 ①**허위·위법 제출** 및 ②**축소·재발급**(1·2차)

① 허위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부당 대출

② 세금계산서 가액을 축소, 국세청에 재신고 후 금융기관에 未고지

⇒ **(既 개선) 세금계산서 진위 확인 체계 및 불법 대출 제재 강화**

- ①대출승인(금융기관), ②자금대여(에공단→금융기관), ③사업개시(제3자) 각 단계별 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 **점검체계 既 구축**('23.1월)

- **불법 대출** 시, ①**즉시 환수 절차 착수**, ②업체는 **참여제한 조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공단 규정) 개정 既 완료('23.4월)

⇒ **(개선 계획) 과세정보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자금신청자 및 시공업체의 '**과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공단 규정) 中 제출서류 항목 추가('23.7월)

- 세금계산서 **변동 확인 시스템** 추진(예산안 반영중, 국세청 협조 要)

○ **(지적)**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지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대출받은 후 실제는 **미경작**하는 등 **농지법 위반**(1·2차)

⇒ **(既 개선)** 농지 건축물은 실제 경작 요건* 충족시 융자 지원

- 융자**신청일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대장 및 경작관련 **매출 증빙자료 제출**

* 「2023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부 공고) 既 공고('23.3월)

⇒ **(개선 계획)** 경작 확인이 어려운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는 제외

* 「2023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부 공고) 변경 공고('23.7월)

○ **(지적)** ①**과다대출**, ②**非대상 추천**, ③**자금 未반납**(2차)

- 일부 은행에서 공사비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대출, 非대상* 추천, 대출 미실행 자금 未반납**

* 기준시점(전년도 10월 이후 착수) 이전에 착공 또는 준공한 사업
** 은행은 대출 미실행시 대여자금을 10일 이내에 공단에 반납 의무

⇒ **(既 개선)** 대출 미실행 18억 환수('23.2), 계약서와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동시확인하여 공사 착수시점 확인후 대출 추천

* 「2023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부 공고) 既 공고('23.3월)

⇒ **(개선 계획)** 대출정보 정기제출 및 자금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금융기관에서 에공단으로 **실제 대출정보 정기제출 의무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공단 규정) 개정 추진('23.7월)

- 집행기관(공단·은행)이 자금추천, 대여·상환, 실제대출, 실태조사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예산안 반영중)

○ **(지적)** ①**전력기술관리법 위반**, ②**무등록업체 계약·불법하도급**(1차)

①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설계도서'가 아닌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총공사비 산정 및 대출금 추천**

② **시공업체**가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이거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전기안전공사 설비검사상 **시공업체와 상이**

⇒ **(既 개선)** 대출 신청시점 조정 및 제출서류 강화

- 총공사비 확정 시점으로 **신청시점 조정**(개발행위허가→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전기분야 기술사 날인) **제출 의무화**

-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출 의무화**, 불법하도급 확인 절차 강화

 * 「2023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부 공고) 旣 공고('23.3월)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1·2차 점검) : 2,257건, 901억원

○ **(지적)** 지자체에 사업비 교부 후 2년 초과 **장기 이월금 미환수**(1차)

⇒ **(旣 개선)** 78억 환수 완료, 16억 반납확약서 수취완료(~'23.5)

- 환수 절차* 따라 대상금액 심의·확정** 및 공지('22.8)

 * 발주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2년 초과 장기 이월금 233억 중 실 회수대상 116억 확정,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117억원은 회수 유예

- 지자체 대상 환수 대상금액 반납 안내 및 독려('22.9~)

⇒ **(개선 계획)** 미환수 잔여 지원금 38억원 환수 추진(~'23), '23년 말까지 미환수 시 '24년도 사업비에서 삭감*

 *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후 조치('23.12월)

○ **(지적)** ①보조금으로 **맹지 취득 후 방치** 및 ②취득한 부동산을 지자체 **승인없이 임의 매각**, ③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부동산 매입**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2차)

⇒ **(개선 계획)** 지자체가 직접 부동산 취득·관리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입·매각시 감정평가 의무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부 지침) 개정 추진(~'23.7월)

- ①부동산 취득이 필요한 사업은 **시설물활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②부동산은 **지자체가 직접 구입**, 필요시 **'부기등기'** 후 이관하여 지자체 **승인없이 임의매각 원천 차단**

- ③**가격조사 실시 의무화** 및 관리상 위법시 제재법령 명시

○ **(지적)** 산업부 **승인없이** 다른 사업에 **임의 집행**, **특정 주민 또는 단체 지원** 등 보조금 **집행 및 결산 부적정**(1·2차)

⇒ **(개선 계획) 규정 개정 및 집행 점검·지자체 대상 교육 강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부 고시)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부 지침) 개정 추진(~'23.7월)

- 미승인 **임의변경 사업**은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하도록 규정
- **분기별 사업계획** 변경현황표 제출 의무화
-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 및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 **(지적사항) 쪼개기 수의계약, 무등록업체 계약** 등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 수의계약** 등 **계약 부적정**(1·2차)

⇒ **(개선 계획) 지자체가 직접 계약 및 마을회 등 보조사업자에게 재위탁 가능한 사업을 단순 행정사무로 한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부 지침) 개정 추진(~'23.7월)

- 지방계약법 준수의무 명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조달공모 계약 유도 및 지역 내 수의계약업체 선정 기준 명확화

○ **(지적)** 산업부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및 **마을회 등에 재위임**, 전기·통신비요금 **보조시 일정금액으로 배분** 등 부적정(2차)

⇒ **(개선 계획) 중요 사업내용 변경은 발주변 심의위원회 승인 사항, 임의변경 사업은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부 지침) 개정 추진(~'23.7월)

- 지자체가 재위임한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방안 마련 의무화(조례 등)
- 전기·통신비 요금은 세대별 실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3 전력분야 R&D(2차 점검) : 172건, 266억원

○ **(지적)** '불성실 중단과제' 등에 대한 **사업비 미회수** 및 R&D 완료 과제에 대한 **정산·환수 지연** 등 **사업관리 부적정**(2차)

* 전담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한 자체검토 미흡 및 관련 규정 불명확

⇒ **(개선 계획) 정산 등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23.9월, 전담기관)

-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한 전담기관 직원 및 연구기관 교육 강화 병행

* 분기별 전담기관 및 연구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 여부 점검 및 교육 실시

○ **(지적)** 장비 도입 심의 **절차 미준수**, 타 사업 증빙자료를 활용한 **사업비 부당 수령**, 부실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집행 부적정**

⇒ **(개선 계획)** 장비 도입 및 연구기관의 현물출자분 정산 등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연구개발 성과로 제작된 **시작품·시설**에 대한 **도입 심의 추진**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 추진(~'23.9월)

- 연구기관의 현물출자 확인서에 **실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산업부 고시) 개정 추진(~23.11월)

④ 농어촌지역 전기공급사업(2차 점검) : 40건, 64억원

○ **(지적)**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사업의 ①**무등록 업무위탁**, ②**통지 의무 위반**, ③**위탁운영 수의계약** 등 부적정 사례 발생(2차)

① 전기안전관리업 **未등록 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② **수의계약 체결**은 감사원 통지사항이나, **미통지**

③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규정 제정 이후에도 **계속 수의계약**

⇒ **(既 개선)** 점검 이후 수의계약에 대해 감사원 통지 실시('22.12~)

⇒ **(개선 계획)** 경쟁입찰 전환 검토 및 시범 도입 후 확대

- 사업의 특성(소규모 시장, 업무 전문성 등)상 **신규업체의 출현에 어려움**이 있으나, 친환경발전도서(태양광+ESS) 등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범 도입**('25)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全 도서지역으로 확대**

 * 현재 위탁사 소속 근로자와 한전간 고용직위 확인 소송 중(1심 위탁사 소속 근로자 승소)

○ **(지적)** 기금단 직원의 기금관리 및 전담기관 업무 동시 수행 등 **사업관리 부실**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 **(개선 계획)** 기금관리와 전담기관 역할 분리를 통해 역할 명확화 및 사업비 관리 철저

5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中 융복합사업(1차 점검) : 379건, 256억원

* 동일 장소에 2종 이상 또는 주거·공공·상업 혼재지역에 1종 이상의 신재생 설비 설치

○ **(지적)**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未정산**(1차)

* 정산성 경비를 표준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로 지원

⇒ **(개선 계획)** 외부 전문기관 활용하여 실비정산 방식 적용 검토

- 실비정산 세부방안 검토(~'23) 및 관련 지침·공고 적용('24.1분기)

* 법률자문('22.11, '23.5) 및 원가산정 전문기관 및 청산전문 회계기관 등에 용역

6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1차 점검) : 15건, 44억원

○ **(지적)** **점검장비** 구매 관련 **입찰 참여업체간 담합**(1차)

⇒ **(旣 개선)**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입찰 공고문 및 규정 개정 완료

- 입찰공고문 내 **담합행위 신고 조항**('23.1월) 및 청렴계약 위반(담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 신설***('23.4월)

*『구매계약사무규정』(전기안전공사, 청렴계약서) 개정('23.4월)

- 현재 **검찰 조사**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및 공정위 제소**

* 공정위 제소는 위법사항이 있어야 가능

7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AMI 보급지원)(1차 점검) : 1건, 142억원

○ **(지적)** '20년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1차 협약 시 **제안서와 협약서 간 소프트웨어 가격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특혜

* 현물출자 인정 소프트웨어 가치 : (제안서) 7.6억원 → (협약서) 85억원

- 수십억 규모의 사업비 내역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업자선정 취소가 필요**

* 당초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업체의 사업비 내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행과정에서 단독입찰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적정가치 재산정을 인정함

⇒ **(旣 개선)** 사업심의위원회가 의결(심의위원 2/3 이상)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심의권한 강화*

* 공고 문안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22년 2차 공고('22.12.5) 건부터 적용하였으며, 추후 후속사업 추진 시 사업 관리지침 등에 반영

- 또한, 가격변경에 관하여는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

참고 **1·2차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요약)**

□ 1차 점검

(단위 : 억원)

분야	유형	지적 건수	지적 금액	既 조치					추가 조치 계획				
				환수		제도개선	수사의뢰	내부감사	환수		제도개선	수사의뢰	내부감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허위·종이 세금계산서	99	-	위법 확인 후 환수 착수 예정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확인 점검 체계 구축(1월) -불법대출 환수 절차, 참여제한 등 지침 개정(4월)	99건 (14명)	-	위법 확인 후 환수 착수 예정		신청인, 시공업체 과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7월)	-	-
	농지법 위반	20	-	-	-	실경작 확인후 융자지원(공고, 3월)	20건 (17명)	-	-	-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제외	-	-
	무등록업체 계약, 불법하도급	1,129	1,847	-	-	전기공사등록증 제출 의무화, 하도급 확인 강화(3월)	1,129건 (333명)	-	-	-	개선완료	-	-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158	-	-	-	신청시점 조정 및 제출서류 강화(3월)	-	-	-	-	개선완료	-	-
	소 계	**1,406**	**1,847**	-	-	-	-	-	-	-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결산·집행 부적정	2	64	-	-	-	-	-	2	환수 검토	관련규정 개정 (7월) 및 집행점검 지자체 교육 강화	-	-
	쪼개기 수의계약	4	30	-	-	-	-	-	4	환수 검토	재위탁 가능사업을 단순 행정사무로 한정(7월)	-	-
	장기이월금 미회수	460	233	280	78	-	-	-	156	38+a	미반납금은 24년 사업비에서 삭감후 지급(12월)	-	-
	소계	**466**	**327**	-	-	-	-	-	-	-	-	-	-
기타	신재생보급(융복합)	379	256	-	-	실비정산 세부방안 검토중 (외부기관 활용)	-	-	-	-	실비정산 세부방안 검토 및 관련지침·공고 적용	-	-
	가정용스마트 전력플랫폼	1	142	-	-	가격변경 관련 사업자 선정 취소 권한 강화(공고 수정)	검찰수사 진행	감사원 감사진행	-	-	가격변경 관련 사업자 선정 취소 권한 강화(사업지침 반영)	검찰수사 진행	감사원 감사진행
	입찰담합 (전기안전점검)	15	44	-	-	-산하기관 구매계약 사무규정 개정 완료 -조달청 입찰공고문 개정 완료	검찰수사 진행	-	-	-	조달청 입찰공고문 위반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정 계획	검찰수사 진행	공정위 제소 (검찰결과후)
	소계	**395**	**442**	-	-	-	-	-	-	-	-	-	-
총 계		**2,267**	**2,616**	-	-	-	-	-	-	-	-	-	-

□ 2차 점검

(단위 : 억원)

분야	유형	지적 건수	지적 금액	既 조치			
				환수	제도개선	수사의뢰	내부감사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허위·종이 세금계산서	549	974	-불법 대출시, 즉시 환수 절차 착수 및 업체는 참여제한 조치 (규정 개정완료, 4월)	-단계별 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 점검체계 구축(1월) -신청인, 시공업체 과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7월) -세금계산서 변동 확인체계 구축(예산반영중)	-	-
	세금계산서 축소 재신고	1,937	3,080			-	-
	증빙금액 대비 과다대출	206	401			-	-
	농지법 위반	286	398	-	-실경작확인(매출증빙)후 지원(규정 개정 완료) -경작확인 어려운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제외	-	-
	비대상 추천, 자금 미반납	32	45	-자금 미반납 총 18억원 환수완료	-대상확인 절차 강화(공사계획 신고필증 확인, 대출정보 정기제출 등) 및 자금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	-
	소 계	**3,010**	**4,898**	-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부동산 취득·매입 부적정	100	232	-	-지자체 직접 구입 및 시설물사용계획서제출 의무화 (규정 개정, 7월) -가격조사, 감정평가, 제재조항 등 지침 개정	-	-
	보조금 결산·집행 부적정	173	115	-미승인 임의변경 사업에 대한 사업중단 및 회수하도록 규정 개정	-지자체 교육, 집행점검 강화 -분기별 사업계획 변경현황표 의무	-	-
	쪼개기 수의계약	438	175	-	-재위탁 가능사업을 단순 행정사무로 한정 규정 (7월)	-	-
	기타 부적정	1,080	52	-미승인 임의변경 사업에 대한 사업중단 및 회수하도록 규정 개정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발주변 심의위원회 승인토록 규정 개정(7월) -전기·통신비요금은 실제 금액 범위내 지원	-	-
	소계	**1,791**	**574**	-	-	-	-
전력 R&D	사업관리 부적절	123	240	-미반납 대비한 보험가입 추진(6월말)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납부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 점검(월,분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11월) -정산관련 운영지침(매뉴얼) 마련 및 전담·수행기관 교육 강화	-	-
	집행 부적정	49	26	-	-관련 가이드라인마련(8월) 및 장비실사용 증빙 강화	-	-
	소계	**172**	**266**	-	-	-	-
기타	수의계약 및 감사원 미통지	40	-	-	-일부 도서부터 경쟁입찰을 도입·운영후 전 도서로 확대 시행('22.12월부터 감사원 통지)	-	-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	6	64	-	-기금사업단 내에서 기금관리기관과 전담기관 업무 분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	-
	신재생보급 (지역지원사업)	278	22	-정산 미실시 사업에 대해 정산 진행중	-지자체, 기금관리기관과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연 2회) 통한 사업 관리·감독 강화	-	-
	태양광시설 도면관리 부적정	62	-	-	-	-	-
	소계	**386**	**86**	-	-	-	-
총 계		**5,359**	**5,824**	-	-	-	-

붙임 2 전력기금 개요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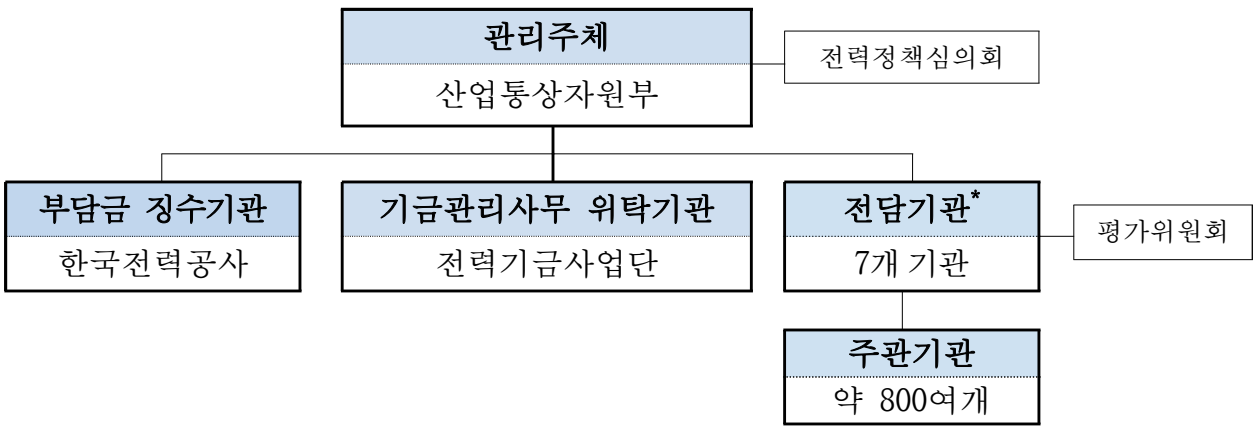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01년에 설치되었다.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전력기금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회계·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예산당국과 협의·조정 후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매년 국회 결산심사를 통한 통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전력기금의 관리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력기금사업단에 기금관리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위해 전력기금사업단, 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7개 전담기관을 두고 있으며, 약 800여개의 주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기금의 사업 관리는 1차적으로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2차적으로 전력기금사업단에서 관리·감독하는 2중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체계 >



* 전담기관 : 전력기금사업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3년 계획 기준, 전력기금의 수입은 2조 8,604억원으로 부담금 수입 2조 5,894억원과 기타 수입 2,7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 수입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사업은 2조 4,068억원이며,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22년 계획 기준 6,590억원이었으나, ’22년 5월 추경을 통해 5,722억원으로 868억 감액되었고, ’23년 계획 기준 4,673억원으로 1,049억원 추가 감액 편성되었다.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은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금융상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2년과 ’23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약 1조 3,000억원,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000억원을 각각 전출하여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22년 약 2.6조원, ’23년 약 3조원을 편성하였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

구분(단위 : 억원, %)		‘19	‘20	‘21	‘22		‘23
					계획	추경	
수입	ㅇ 자체수입	22,988	22,361	24,322	22,843	22,843	28,604
	- 법정부담금	20,872	19,718	21,479	20,816	20,816	25,894
	- 기타 수입	2,116	2,643	2,843	2,027	2,027	2,710
지출	ㅇ 사업비	20,122	26,562	27,065	29,079	27,873	24,068
	ㅇ 기금 전출	-	-	-	15,074	15,118	15,074